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김석기 · 이만희 · 이헌승
엄태영 · 권영진 · 성일중
김기웅 · 김 건 · 김미애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198조제2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8조제2항제1호 중 “대도시”를 “대도시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